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122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제출자	제출일	심사경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2139	정부	'24.7.23.	상정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4.8.26.)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2210954	정부	'25.6.20.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5.11.2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1. 28.)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

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사·연구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나.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국외 전시”를 “국외 전시, 조사·연구”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 전시”를 “국외 전시, 조사·연구”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u>국외 전시</u>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u>국외 전시</u>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① ----- ----- . --- --- <u>국외 전시, 조사·연구</u> --- ----- 국 <u>외로 반출할 수 있다.</u> ② ----- <u>국외 전</u> <u>시, 조사·연구</u> ----- ----- ----- ----- -----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u>임하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u>	<u>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② <u>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u>
---	--